

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평가 신청하세요!

-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제도로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농촌관광 정보제공
- 농촌체험·휴양마을, 관광농원, 농어촌민박 사업체 대상,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
- ‘체험, 음식, 숙박’ 항목별 등급 평가 후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부여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정황근)와 한국농어촌공사(사장 이병호)는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사업*에 대한 ‘2023년 등급결정 평가 신청’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.

* 농어촌체험휴양마을,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

‘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제도’는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농촌관광 정보제공을 위해 농촌관광 사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시설상태, 안전·위생 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. 등급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순서를 기준으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구분하여 부여한다.

신청 대상은 전국의 농촌체험·휴양마을, 관광농원, 농어촌민박 사업체이며 등급결정 신청 부문은 ‘체험, 음식, 숙박’ 총 3개로 농촌체험·휴양마을과 관광농원은 체험 부문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농어촌민박은 숙박 부문만 신청 가능하다.

등급결정 평가를 원하는 사업체는 등급결정 신청서, 시설물 운영현황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접수처에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.

또한 등급결정 평가에 대한 사전 안내를 위해 전국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, 설명회 일정을 비롯한 제출서류와 평가 기준 등 등급 결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농촌관광 전문 누리집 웰촌포털(www.welchon.com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“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제도가 국민에게 고품질의 농촌관광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등급 관리와 함께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밝혔다.

* <접수처(한국경영인증원): 아래 방법 중 선택하여 제출>

①전자우편: seokjin@ikmr.co.kr

②팩스: 02-6309-9004

③우편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04호 한국경영인증원
관광전략센터 우석진 연구원 앞

담당 부서	농어촌자원개발원 농어촌평가부	책임자	부 장	신상규 (031-8084-9541)
		담당자	대 리	방은선 (031-8084-9545)

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제도는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농촌관광 정보를 제공하고자 농촌관광 사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시설상태, 안전·위생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

☐ **신청대상 사업자**

-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농촌체험·휴양마을 사업자 중 '24년 기준 등급 부여가 필요한 마을(갱신필요, 미부여)
-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라 신고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관광농원·농어촌 민박 사업자

☐ **등급결정 신청 부문 : 총 3개 부문(체험, 음식, 숙박) 중 대상 경영체별로 해당되는 부문 신청**

- 농촌체험휴양마을: (필수) 체험부문, (선택) 음식부문, 숙박부문
- 관광농원: (필수) 체험부문, (선택) 음식부문, 숙박부문
- 농어촌민박: (필수) 숙박

☐ **신청기한 : 2023. 5. 1.(월) ~ 5. 30.(화) 18시까지**

☐ **신청방법 : 한국경영인증원 접수담당자 전자우편, 팩스, 우편 접수 중 선택**

- 전자우편(e-mail) : seokjin@ikmr.co.kr
- 팩 스 : 02-6309-9004
- 우 편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04호
한국경영인증원 관광전략센터 우석진 연구원 앞

※ 문의전화 : 02-6309-9071